

인권 및 노동에 관한 정책

Human Rights and Labor Policy

1. 정책의 목적

본 정책은 대호기계공업㈜ (이하 ‘당사’)의 모든 사업장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근로 환경을 보장하며, 비윤리적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향성과 목표를 정의하고자 수립된 공식 문서입니다. 이 정책은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 협약,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준수합니다.

※ 본 정책은 대호기계공업㈜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본 법인 또한 해당 적용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됨을 밝힙니다.

2. 인권 존중 및 인도적 대우

당사는 모든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에게 고문, 구금, 성적·육체적 폭력, 사생활 침해, 직장 내 괴롭힘 등 일체의 비인도적 행위를 금지합니다. 인권침해 요소 발견 시 즉시 내부 고충 처리 채널을 통해 대응하며, 피해자 보호조치를 우선합니다.

3. 강제노동 금지

어떠한 형태의 채용수수료 요구, 담보노동, 여권 및 신분증 압류, 자의의사에 반한 노동, 보상 없는 추가 근로 등 강제노동을 금지합니다. 자발적 근로계약 체결과 퇴사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4. 아동노동 금지

모든 사업장에서 국가별 취업 가능 연령 또는 만 15 세 미만 아동의 고용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미성년 근로자의 경우, 교육권 보장과 유해 작업 배제 등 보호조치를 이행합니다.

5. 차별금지 및 다양성 존중

성별, 연령, 종교, 학력, 출신지역, 국적, 장애, 정치 성향, 성적 지향, 임신 여부 등을 이유로 한 일체의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 단순한 성차별 금지를 넘어서, 모든 형태의 비합리적 차별 금지를 지향합니다. 포용적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성과 평등을 존중합니다.

6.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보장

모든 근로자는 자율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기타 근로자 대표기구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권리를 가지며, 이에 대한 어떠한 차별이나 보복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존중의 원칙 하에 단체교섭을 실시합니다.

7. 생활임금 보장

당사는 법정 최저임금 이상 지급을 기본으로 하며, 근로자가 식사, 주거, 의료, 교육, 교통 등을 포함한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향합니다.

8. 지역주민 및 토착민 권리 보호

토지, 수자원, 산림 등의 취득 및 개발 과정에서 지역주민 또는 토착민의 퇴거, 자원 접근 제한 등 생계 위협 행위를 금지합니다. 관련 사업 추진 전, 영향 분석과 사전 협의를 통한 동의를 구하며,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합니다.

9. 고충처리 메커니즘

당사는 인권침해 가능성에 대비해 내·외부 이해관계자가 신속하고 익명으로 접근 가능한 고충처리 채널을 운영합니다. 접수된 사안은 적절한 조사 및 구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하며, 고충 제기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10. 이행 및 관리

본 정책은 연 1 회 이상 정기 검토되며, 경영진은 정책의 이행 및 개선 책임을 집니다. 임직원은 본 정책을 숙지하고, 교육을 통해 이를 실천할 의무가 있으며, 위반 시 사내 징계 또는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문서번호: DH-관리-1-3

최초제정일: 2025 년 1 월 2 일 / 최종개정일: 2025 년 1 월 2 일

책임부서: 관리부